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2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서범수・김위상・한지아

이달희 • 이인선 • 조은희

박성민 · 김상욱 · 고동진

이헌승·장동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한다)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, 노동력 착취,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 (범죄)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·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·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

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,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·운영,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,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·도경찰청장이시·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과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8조).
- 나.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인신매매등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관계부처와 신속한 정책 협의·조정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다. 경찰청장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라. 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함(안 제13

조).

- 마.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신고의무자는 경찰청장에게 피해 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경찰청장은 피해자권익보호기 관에 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- 바. 경찰청장은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(안 제15조제1항).
- 사.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임무에 인신매매 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,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, 사례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추가함(안 제15조).
- 아. 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·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시·도경찰 청에 둔다(안 제15조 제2항).
- 자. 경찰청장은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함(안 제27 조).
- 차. 경찰청장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29조).
- 카. 경찰청장은 3년마다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

가하고,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(안 제38조).

- 타. 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신매매등피해 자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(안 제45조).
- 파. 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그 권한의 일부를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47조).
- 하. 법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령을 여성 가족부렁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함(안 제10조, 제15조, 제33조, 제34조, 제38조).

법률 제 호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총리 겸 교육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중 제3항 중 "제2항제9호"를 "제2항제10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여성가족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- 1. 교육부차관
- 2. 법무부차관
- 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- 4. 보건복지부차관

- 5. 고용노동부차관
- 6. 여성가족부차관
- 7. 해양수산부차관
- 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차관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5조"를 "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 익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, 같은 조 제2항"으로, "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판정위원회"라고 한다)를"을 "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판정위원회"를 "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 등사례판정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"를 "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

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, "제15조"를 "제15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, "위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"를 "위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8호)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, "예방·방지"를 "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"으로 한다.

- 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
- 8.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- 9.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피해자를"을 "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"로,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"를 "시·도경찰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"를 "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"을 "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"으

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을 "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"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33조제4항제1호 단서, 같은 항 제2호 단서,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"여성가족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"여성가족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및 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을 "경찰청장"으로,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경찰청장,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, "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"을 "제15조제1항에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"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시·도경찰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계획은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실적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- 제5조(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제출한 교육결과는 제11조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은 제 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제7조(중앙·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인신매매등사례 판정위원회 및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및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피해자 확인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 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

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권리·의무는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	제3조(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
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자) ①
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	
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는 이 법	
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	3
람(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	
한다)으로서 제14조에 따라	
<u>여성가족부장관</u> 으로부터 확인	<u> 경찰청장</u>
서를 발급받은 사람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	제8조(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
의 수립) ① <u>여성가족부장관</u> 은	의 수립) ① <u>경찰청장</u>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	
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	
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	
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	
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	
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	
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	
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	
우에도 또한 같다.	

- ② (생략)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<u>여성가족부</u>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 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⑤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 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 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9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 의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・ 조정을 하기 위하여 <u>부총리 겸</u>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 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(이하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경찰청장</u>
④ <u>경찰청장</u>
⑤ <u>경찰청장</u>
⑥ (현행과 같음)
세9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
의회) ①
<u>행정안전부</u>
<u> 장관</u>

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<u>부총리 겸 교</u> 육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, 그 밖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법무부장관
- 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- 3. 보건복지부장관
- 4. 고용노동부장관
- 5. 해양수산부장관
- 6. 경찰청장

<신 설>

7. (생략)

<신 설>

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

 중앙행정기관의 장

9. (생략)
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•
1		~	_	,	4		(중	7	5))	ī	让		ヹ	<u>-</u>	<u>0</u>	-)					

(2) -----

-----<u>행정안전부장</u>

<u>-</u> 경찰청장-----

----.

- 1. 교육부차관
- 2. 법무부차관
- 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- 4. 보건복지부차관
- 5. 고용노동부차관
- 6. 여성가족부차관
- 7. 해양수산부차관
-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 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 관급 공무원. 이 경우 복수 차 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<u><삭 제></u>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- ③ <u>제2항제9호</u>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<u>여성가족부</u>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⑤ (생략)
- 제10조(인신매매등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, 이를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

③ <u>제2항제10호</u>
4
<u>행정안전부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인신매매등 실태조사) ①
<u> 경찰청장</u>
· ② 경찰청장
<u> </u>

-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 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여성가족부</u> 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
 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
 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
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
 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
 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
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~ 8. (생 략)
 - ② (생략)
- 제13조(피해자식별지표 등) ① 여 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 에 발견하고 보호·지원하기 위 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 한 지표(이하 "피해자식별지표" 라 한다)를 개발하여 고시하고, 검사, 사법경찰관리, 출입국관 리공무원,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 야 한다.

③
<u>행정안전부</u>
<u> </u>
제11조(교육 등) ①
<u>경찰청</u> 、
<u> 장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피해자식별지표 등) ① <u>경</u>
<u> 찰청장</u>
<u>.</u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 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활용 실적을 <u>여성가족</u>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피해자 확인서 발급) ① 기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 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·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 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 례판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판정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 다.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<u>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</u> 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 급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경찰청장</u>
제14조(피해자 확인서 발급) ① -
세14소(퍼에자 확힌지 달宙) ① =
경찰청장
②
<u>제15조</u>
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
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중앙인
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, 같
은 조 제2항지역인신매매
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
<u>중앙인신매매등사</u>
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
등사례판정위원회
③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
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
<u>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</u>

- ④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<u>제15조</u>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⑤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피해자 확 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 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를 송부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 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5조(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)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

<신 설>

<신 설>

	④ <u>경찰청장</u>
	제15조제1항-
	·
	⑤ <u>경찰청장</u>
	<u>.</u>
제	15조(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
	호기관의 설치) ① <u>경찰청장</u>
	٥١
	<u>위</u>
	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
	<u>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</u> 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,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
- 8.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
- 9.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 회의 운영

- 8. 그 밖에 <u>여성가족부령으로</u> 정하는 인신매매등 <u>예방·방</u> 지 관련 업무
- ② <u>피해자를</u> 신속히 식별·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 익보호기관을 <u>특별시·광역시</u>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.
- 1. ~ 3. (생략)
- 4. <u>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</u>의 운영
- 5. 그 밖에 <u>여성가족부령</u>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·방 지 관련 업무
- ③ (생 략)
- ④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도지사"라 한다)는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 매등 예방·방지를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 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

<u>10</u> <u>행정안전부령</u>
예방 · 방
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
② 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
시·도경찰청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
<u>ॼ</u> ॊ
5 <u>행정안전부령</u>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</u>
<u>0</u>

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여성가족부</u> <u>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그 운 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.

⑤ (생략)

- 제27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) ① (생 략)
 - ②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.
 - ③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「법률구 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 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 략)

제29조(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
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(이하 "전담의료기관"이라 한다)으로

<u>경찰청장 및</u>
시·도경찰청장은
⑤ (현행과 같음)
제27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경찰청장</u>
<u>.</u>
③ <u>경찰청장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
① <u>경찰청장</u>

지정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지원시설의 설치・운영	제33조(지원시설의 설치・운영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	4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일반지원시설: 1년 이내. 다	1
만, <u>여성가족부령</u> 으로 정하는	<u>행정안전부령</u>
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	
에서 연장할 수 있다.	<u>.</u>
2. 장애인지원시설: 2년 이내.	2
다만, <u>여성가족부령</u> 으로 정하	<u>행정안전부령</u>
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	
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	
있다.	.
3. 아동・청소년지원시설: 19세	3
가 될 때까지. 다만, <u>여성가족</u>	
<u>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	<u> 부정</u>
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	
다.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: 2년	5
이내. 다만, <u>여성가족부령</u> 으로	<u>행정안전부령</u>
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	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⑤・⑥ (생 략)

- 제34조(지원시설의 업무) ① 일반 제34조(지원시설의 업무) ① -----를 수행한다. ------
 - 1. ~ 10. (생략)
 - 11.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 기 위하여 <u>여성가족부령</u>으로 정하는 업무
 - ② ~ ④ (생 략)
 -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~ 3. (생략)
 - 4.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<u>여성가족</u>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- 제38조(지원시설 등의 평가) ① <u>여성가족부장관</u>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여성</u><u>가족부령</u>으로 정한다.
- 제45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<u>여성</u> <u>가족부장관</u>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시 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
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<u>.</u>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
<u>행정안전부령</u>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
······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행정안전</u>
부령
제38조(지원시설 등의 평가) ① <u>경찰청장</u>
<u>'0' 원 '0' 0</u> 
②
<u>행정</u>
<u>안전부령</u>
제45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<u>경찰</u> 청장

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 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 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- ③ <u>여성가족부장관</u>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 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제4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<u>여성가족부장관 및</u>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·도지사</u>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0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경찰청장</u>
제4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<u>경찰청장</u>
시·도경찰청
<u> 장, 시·도지사</u>
② <u>경찰청장</u>
제15조제1항
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
권익보호기관
제5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여성가족부장관</u>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 다.

같음)
③
<u>시·도경찰청장</u>